

DDA, 2008년 8월 농업협상*

신 유 선

각료회의 논의 진
전사항을 요약 기
술한 농업 및 비농
산물분야 의장문서
가 8월 11일 회람
되었다.

농업 및 비농산물 세부원칙 타결을 위해 지난 7월 21일부터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¹⁾의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²⁾ 소규모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³⁾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7월 25일 핵심쟁점에 대한 잠정타협안이 도출된 이후 타결전망이 밝아졌으나 일부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끝내 결렬되었다. 특히 농업분야에서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⁴⁾와 미국의 면화보조금 삭감문

* 본 내용은 국내외 DDA 관련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유선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shinys@krei.re.kr 02-3299-4287)

- 1) 1948년 이후 GATT가 추구해온 자유-공정무역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WTO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여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모든 교역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기 위해 1995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출범한 경제분야의 UN과 같은 기구이다. 기존의 GATT가 단순히 계약, 협정 형태로 되어 있어 회원국들이 GATT상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시키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약속이행의 감시 등 회원국들의 의무이행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국제기구이다. WTO는 GATT와는 달리 법인격과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사결정방식은 컨센서스방식을 채용하여 특정 안전 표결시 회의 참가국의 명백한 반대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으로 간주하며, 컨센서스에 의한 결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투표국의 표결로 결정한다. WTO는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특별이사회, 상설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회의 참석은 모든 WTO 회원국에 개방되어 있다.
- 2)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Doha)'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아홉 번째 다자간무역협상을 말한다. 이전의 '라운드'라는 명칭대신에 개도국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도하개발아젠다'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협상은 WTO 15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며, 2008년 현재 세부원칙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 3) WT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고 통상 2년에 한 번 열린다. 각료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동안에는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 4) DDA 협상에서 개도국을 위한 SSM을 만들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협상중인데, 기존의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SSG)와 유사한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 등에 있어 미국과 인도, 중국이 협상 막판까지 의견대립이 커서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하였다.

이번 각료회의 논의 진전사항을 요약 기술한 농업 및 비농산물분야(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NAMA)⁵⁾ 의장문서가 8월 11일 회람되었다. 농업분야 의장문서는 각료회의 잠정타협안을 중심으로 정리되었으며, 미소진 메카니즘과 수출 경쟁 등에 있어서도 진전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향후 농업분야 잔여 쟁점으로 개도국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⁶⁾와 수입쿼터(Tariff Rate Quota, TRQ)⁷⁾ 신설 문제, 관세단순화(Tariff Simplification)⁸⁾, 면화보조금 등 4가지 사항을 언급하였다.

향후 농업분야 잔여 쟁점으로 SSM과 TRQ 신설문제, 관세단순화, 면화보조금 등 4가지 사항이 언급되었다.

1. 각료회의 의장보고 내용

DDA 각료회의 협상기간 중에 중요 이슈에 대하여 신뢰할 만한 합의의 틀을 도출하였으나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중대한 이견이 존재하였다. 각료회의에서 진전이 있었던 사항으로는 최상위구간 관세 감축률(Reduction Rate)⁹⁾ 70%,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¹⁰⁾ 개수 4+2%, 76항의 관세상한(Tariff Capping)¹¹⁾, 쿼터내 관세,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SSG)¹²⁾ 품목수 감축, 특별품목(Special Product, SP)¹³⁾ 품

각료회의에서 진전 사항으로는 최상위구간 관세감축률 70%, 민감품목 개수 4+2%, 76항의 관세상한, 쿼터내 관세, SSG 품목수 감축, SP 품목수 및 대우, 열대작물 및 특혜장식 품목의 리스트 및 대우, OTDS 감축률 등이다.

- 5) DDA 협상에서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업이외의 물품 즉, 공산품에 대해서도 협상을 한다. 농업협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반영하여 농산물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비농산물협상'이라고 한다.
- 6) DDA 협상에서 개도국을 위한 SSM을 만들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협상중인데, 기존의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SSG)와 유사한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7) 수입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정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콩에 대해 100톤까지는 5%의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100톤이 넘는 물량은 120%의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5%의 관세를 쿼터밖관세(out-quota tariff)라고 한다. 만약, 한해 동안 콩의 수입이 70톤만 되었을 경우 수입쿼터 소진율(fill rate)은 70%가 되고 30톤이 미소진(underfill)되었다고 말한다.
- 8) 관세단순화는 종량세 등의 관세를 증가세와 같이 단순한 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452개 농산물 세번 중에서 76개 세 번이 종량세이고, 이 또한 증가세와 병기되어 있어 종량세와 증가세 중 더 높은 수치를 적용하는 혼합세이다.
- 9) 관세를 감축하는 정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200%p에 관세감축율 50%를 적용하면 감축 후 관세는 100%p가 된다. 극단적인 경우로 관세감축율이 100%이면 모든 관세는 감축 후에 0%가 된다.
- 10) 민감품목은 관세감축을 덜 할 수 있다. 다만 대가로 수입쿼터(TRQ)를 주어야 한다. 민감 품목의 개수는 국별로 전체 세 번(tariff lines)의 5% 내외에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감 품목의 대우 즉, 관세를 얼마나 적게 감축하고 TRQ를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는 DDA 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 가운데 하나이다.
- 11) 관세 상한은 일정한 수준을 넘는 관세는 무조건 일정한 수준으로 끌어 내리자는 개념이다.
- 12)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농산물에만 적용하는 SSG 제도가 탄생하였다. 수입물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국제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자동적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추가로 부과되는 관세를 '구제조치(Remedy)'라고 하기도 한다. SSG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국별로 특별 긴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농산물을 이행계획서(Schedule)에 표시해 두었다.
- 13) 개도국들은 식량안보, 생계유지, 농촌개발의 필요를 감안하여 특별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특별 품목 개수와 대우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선진국, 농산물 수출개도국들과 이를 가

협상실패 요인으로
는 SSM의 경우,
UR 양허관세 초과
시의 발동기준에
대한 이견차가 컸
고, 기술적인 문제
보다 정치적인 이
유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목 수 및 대우, 열대작물(Tropical Products)¹⁴⁾ 및 특혜잠식(Preference Erosion)¹⁵⁾ 품목의 목록 및 대우, 무역왜곡보조총액(Overall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OTD S)¹⁶⁾ 감축률 등이 제시된 것을 들 수 있다.

협상실패 요인과 관련해서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의 경우,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UR)¹⁷⁾ 양허관세 초과시의 발동기준에 대한 이견차가 컸고, 기술적인 문제보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분석된다. 특히, 면화, TRQ 신설, 관세단순화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였다.

시장접근분야

최상위구간 관세감축률

70% 감축안이 선진 7개국(G7)¹⁸⁾과 그린룸(Green Room)회의¹⁹⁾ 잠정안에 반영되었다.

민감품목 (Sensitive Product, SeP)

선진국의 민감품목의 개수는 4% + 2%개념이 잠정안에 반영되었다. 개도국의 민감품목의 대우와 관련해서 일정 수의 민감품목(1/3~2/3)에 대해 관세감축률을 일반감축률보다 낮게 하되, 이탈(Deviation)²⁰⁾이 클수록 더 적은 품목 수에 대해 이행

개도국의 민감품목
에 대해 관세감축
률을 일반감축률보
다 낮게 하되, 이탈
(Deviation)이 클수
록 더 적은 품목 수
에 대해 이행기간
을 더 많이 단축하
는 개념이 반영되
었다.

능한 확대하려는 농산물 수입 개도국 간 입장차가 크다.

- 14) 열대작물은 일반적으로 열대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과 마약류를 대체하여 열대지역에서 재배되는 품목을 말하지만 DDA 협상에서 합의도니 정의는 없다. 열대지역에 분포한 개도국들은 열대작물의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열대작물에 대한 관세의 대폭적인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관건은 열대작물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인데, 열대작물그룹과 기타국간에 의견차가 컸다. 열대작물은 특혜잠식과 상충되는 면이 있어 DDA 협상에서는 열대작물과 특혜잠식 이슈가 함께 논의되고 있다. 열대작물그룹(코스타리카 등 주로 남미 국가)은 열대작물의 급격한 관세감축을 주장하지만, 그럴 경우 다른 국가(이미 여타 국가보다 낮은 관세로 선진국 시장에 진입하던 국가로 주로 아프리카 국가)가 누려오던 특혜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해당 국가들은 점진적으로 관세감축을 주장하였다.
- 15) 특혜잠식문제는 주로 모리셔스 등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연안(ACP) 소규모 국가들이 제기하는 문제이다. 이 나라들은 설탕 등 일부 농산물을 낮은 특혜관세로 EU 등 선진국 시장에 수출하고 있는데, 선진국들이 관세를 전반적으로 낮추면 특혜관세와 일반관세의 차이, 즉 특혜마진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된다고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였다.
- 16) UR 협상에서 크게 감축위무가 없는 허용보조인 그린박스과 가축을 해야 하거나 사용에 제한이 따르는 감축대상보조(AMS), 최소허영보조(De-minimis), 블루박스의 개념이 탄생하였다. DDA 협상에서는 AMS, De-minimis, 블루박스를 묶어서 무역왜곡보조총액(OTDS)이라고 하기로 했으며, AMS, De-minimis, 블루박스 각각도 감축해야 하고 사용상 제한이 따르며, 이를 모두 더한 OTDS도 감축해야 한다.
- 17) 1986년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통상장관회의에서 시작되어 1994년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종결된 여덟 번째 다자간무역협상을 말한다. 과거 7차례의 다자간무역협상이 대체로 공산품 교역에 한정되어 있었던 반면, UR협상은 농업, 지적재산권, 서비스 등 무역의 대부분 분야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18) 세계경제를 좌우하는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으로 구성된 그룹이며, 여기에 러시아를 포함하여 G 8이라고 하며, 신흥 개도국 15개국을 포함하여 G 22이라고 한다.
- 19) WTO 사무총장이 초청한 20여 개국의 협상수석대표들이 모여 중요 안건을 다루는 회의로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는 의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해 주로 개최된다. 회의가 개최되는 WTO 회의실의 벽지색깔이 녹색이어서 'Green Room'회의로 이름 붙이게 되었다.

기간을 더 많이 단축하는 개념이 반영되었다.

관세상한의 경우는 76항이 선진 7개국(G7)과 그린룸 회의 잠정안에 반영되었고, TRQ 신설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였다.

관세단순화 (Tariff Simplification)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였다.

쿼터내관세

쿼터내 단일관세를 적용원칙하에 구간경계(Threshold)²¹⁾나 일정 감축률 적용 결과 중 낮은 수치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합의를 위한 많은 진전이 있었으며, 개도국 TRQ에 대해서도 세부사항에 관한 추가논의가 필요하나 선진국 TRQ와 유사한 진전이 있었다.

쿼터관리

쿼터미소진 메카니즘의 개도국 적용에 대한 합의의 틀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특별긴급관세 (Special Safeguard, SSG)

선진국의 SSG 품목을 축소하고, 7년 후 철폐한다는 내용이 선진 7개국(G7)과 그린룸 회의 잠정안에 반영되었다. 개도국의 SSG의 경우도 일반개도국은 아주 낮은 수준, 소규모취약국가(Small and Vulnerable Economics, SVE)²²⁾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합의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별품목 (Special Product, SP)

특별품목 및 관세를 전혀 깎지 않는 제로 컷(No Cut) 세번(Tariff Line, TL)²³⁾ 수와 평균감축률의 수치가 잠정안에 반영되었다.

선진국의 SSG 품목을 축소하고, 7년 후 철폐한다는 내용이 선진 7개국(G7)과 그린룸 회의 잠정안에 반영되었다.

특별품목 및 관세를 전혀 깎지 않는 제로 컷(No Cut) 세번수와 평균감축률의 수치가 잠정안에 반영되었다.

20) 민감품목은 일반품목에 비해 관세감축을 덜 할 수 있는데, 얼마나 덜 감축하는 것을 허용하느냐를 이탈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100% 관세가 있고 일반 관세감축률이 50%라고 하면 감축 후 관세는 50%가 된다. 그런데 이탈을 50% 허용한다고 하면 일반관세감축률 50%의 50% 이탈이 허용된다. 따라서 25%만 감축하면 된다. 이 경우 100% 관세는 감축 후 75%가 된다. DDA 협상 중 민감품목에 이탈을 많이 허용하려는 수입국들과 이탈을 가급적 제한하려는 수출국들간의 입장차가 컸다.

21) DDA 농업협상에서는 관세가 높을수록 관세를 더 많이 깎기로 합의하였다. 예를 들어 관세가 100%이면 70%의 감축률을 적용하고 관세가 50%이면 60%의 감축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100%인 관세는 관세감축 후 30%가 되고, 50%인 관세는 20%가 된다. 이렇게 높은 관세에 높은 감축률을 적용하려면 구간이 나누어져야 한다. 이렇게 구간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관세 수치를 구간경계라고 한다. 지금까지 논의 결과 구간 수는 4개이다.

22) 소규모 취약국가로는 볼리비아, 쿠바, 온두라스, 파라과이 등이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DDA 협상에서 관세와 보조금을 덜 깎는 혜택을 받는다. 어느 정도 인정해줄지에 대해서는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23) 관세를 부과하는 기본 단위이다. 예를 들어 우리의 경우 쌀이라는 한 가지 품목에는 16개 정도의 세번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HSK 10단위로 구분하고 있다.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

UR 양허관세를 초과할 수 있는 SSM의 발동기준과 관련하여 선진 7개국(G7)내에서 현격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였고, 이에 따라 초과수준 및 발동회수에 대해서도 합의할 수 없었다. SSM에 관한 이들 국가의 입장 차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열대작물 (Tropical Products)

열대작물 목록과 대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특히 열대작물과 특혜잠식 (Preference Erosion) 품목간 겹치는 문제도 해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보조분야

무역왜곡보조총액(OTDS)은 3차 수정안의 괄호()의 중간치를 잠정안에 반영하였다. 특정품목 감축대상보조(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²⁴ 및 특정품목 블루박스(Blue Box)²⁵ 상한수준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나 전체적인 합의하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경쟁분야

식량원조(Food Aid)²⁶, 수출신용(Export Credit)²⁷, 수출국영무역기업(Exporting State Trading Enterprise)²⁸, 수출보조(Export Subsidy)²⁹ 철폐 등 수출경쟁내용은 구체적이고 균형적인 결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인 수출제한관련 텍스트는 모든 회원국이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면화의 경우 해결의 기초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무역왜곡보조총액(OTDS)은 3차 수정안의 괄호()의 중간치를 잠정안에 반영하였다.

식량원조, 수출신용, 수출국영무역기업, 수출보조 철폐 등 수출경쟁 내용은 구체적이고 균형적인 결과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4) 농업보조총액이라고도 한다. UR 협상 결과 각국이 추곡수매제 등에 사용하는 보조금 한도를 정해서 이행계획서에 표시했고, 이것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선진국은 6년간 20%를 감축하고 개도국은 10년간 13.3%를 감축하기로 하였다. DDA 협상에서는 이렇게 감축하고 남은 한도에서부터 감축하기로 하였다.

25) 단순히 보면 본질적으로 감축대상보조(AMS)와 같은 보조금이다. 그러나 UR 협상과정에서 주요국간 타협의 산물로 탄생했는데, 생산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대신 감축의무가 면제되는 보조금이다. 이것이 현재의 블루박스(Old BB)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블루박스로 지급된 보조금이 없다. DDA 협상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블루박스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기존 블루박스와는 달리 생산제한을 하지 않고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이다. 이를 새로운 블루박스(New BB)라고 한다. 물론 마음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경지면적 등을 고정하는 등의 제약이 따른다.

26) 식량원조가 잉여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한 수출지원 형태로 이용되어 다른 수출국의 이해를 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DDA 협상에서는 식량원조가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현금원조(현물이 아니라) 위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27) 농산물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이자 등 금융거래가 필요하다. 과거에 농산물 수출에 조달되는 자금을 대해서는 낮은 금리 등을 적용했는데, DDA 협상에서는 이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시장금리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방안을 협상중이다.

28)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거대한 수출국영무역기업이 있어 국제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DDA 협상에서는 이들 기업의 독점력을 규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9) 농산물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선진국은 2013년까지, 개도국은 2016년까지 수출보조를 철폐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개도국의 물류비 등 운송비용 지원은 2021년 까지 지원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양우 DDA 협상 방향

협상전략 측면에서 세부원칙의 합의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협상 전략상 핵심 쟁점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제시는 선부른 제시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행계획서(C/S) 작성

내부적으로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 C/S)³⁰⁾ 작성이 준비되어야 한다. 각료회의는 비록 결렬되었지만 각료회의 기간에 만들어진 잠정합의안과 8월 11일 회람된 의장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이행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현재 주어진 틀 내에서 융통성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보조금 감축과 민감 및 특별품목의 활용방안을 사전에 만들어 놓아야 할 것이다. 특히,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의 선정에 있어 국내 품목단체들과의 이해관계 조정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행계획서 작성에 앞서 충분한 사전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주어진 틀 내에서 융통성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보조금 감축과 민감 및 특별품목의 활용방안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개도국지위 유지

개도국 지위³¹⁾ 유지를 위한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UR 때 이미 선진국 의무 이행을 중용받은 경험이 있으므로 DDA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는 매우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1993년 UR 협상 당시 미국과 EU 등은 한국의 개도국 지위 인정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BOP 품목 양허 등의 수입개방 확대 폭을 감안하여 미국이 개도국 지위를 인정하였다.

개도국 지위 유지 문제는 세부원칙이 타결되고 이행계획서 제출 이후 양자 검증 단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개도국 지위는 회원국 간 협상의 산물이며, 특수한 사정이 감안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양자협상을 통한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논리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향후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양자협상을 통한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논리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의 일환으로 첫째, 개도국 지위 유지를 우선순위로 삼고 개도국 특별품목그룹(G33)³²⁾ 활동을 지속하는 등 개도국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농

30) 세부원칙이 타결되면 각국별로 세부원칙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적은 문서, 즉 이행계획서를 WTO에 제출한다. 이행계획서가 세부원칙에 따라 잘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WTO 회원국들이 검증을 하고 검증이 끝나면 DDA 협상이 종결된다.

31) 선진국 또는 개도국을 분류하는 명확한 공통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기구에 따라 또는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준으로 회원국을 분류하고 있으나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제기구에 따라 선진국 또는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32) G33은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필리핀 등 개도국 SP를 옹호하는 나라들의 모임으로 개도국 특별품목 개수를 충분하게 많이 인정하고 관세감축을 적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룹이다.

업부문의 특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등의 외교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선발 개도국으로서 개도국에 요구되는 수준보다 높은 의무를 스스로 이행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특별품목(SP)과 개도국특별긴급관세(SSM)의 활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개도국으로서 제한된 권한만을 행사하는 것은 국내정치 환경을 고려할 때 어려운 선택이나 최종 단계의 협상 전략으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보도 자료(www.maf.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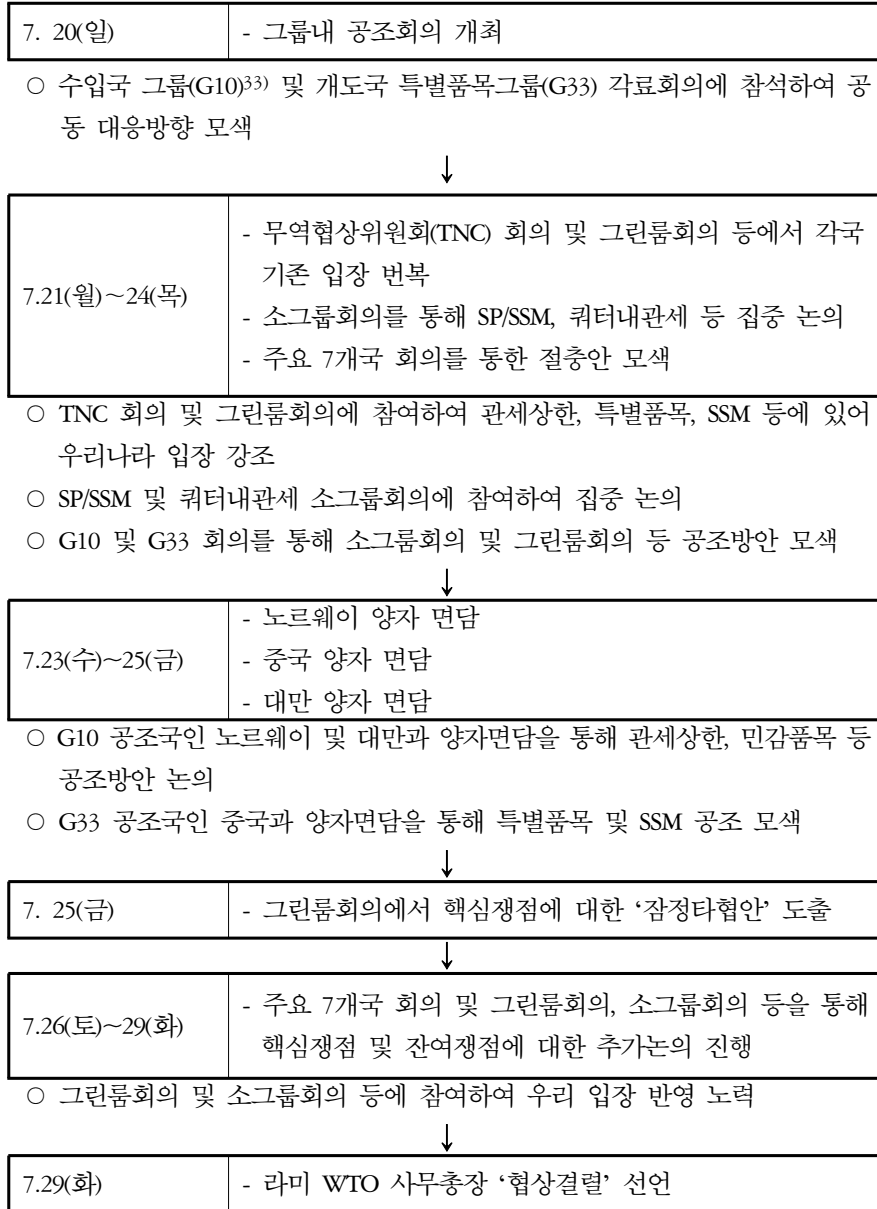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용어해설, 2007

농림수산식품부, 알기 쉬운 DDA협상용어 70선, 2008. 6

농림수산식품부 해외농업 사이트(www.insidetrade.com)

WTO,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TN/AG/W/4/Rev.3, 10 July 2008

부록 1. DDA 각료회의 추진 경과



³³⁾ G10은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농산물 순수입국 모임으로 농산물 관세를 지나치게 많이 감축하는데 반대하는 그룹이다.

부록 2. DDA 각료회의 잠정 타협안 내용

	선진국	개도국
관세 감축	○ 구간별 감축률(이행기간 5년)	○ 구간별 감축률(이행기간 8년)
	구간경계	구간경계
	감축률(%)	감축률(%)
	75% 초과	130% 초과
	50%~75%	80%~130%
	20%~50%	30%~80%
20%이하	30%이하	
관세 상한	○ 관세상한(100%) 적용 예외 규정 -민감품목과 비민감품목 중 1%: *단, TRQ증량 등 추가 보상 필요	○ 관세상한(150%) 적용 예외 규정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예상) *단, 민감품목은 추가 보상 필요
민감품목	○ 개수: 4% ○ TRQ증량: 소비량의 4%	○ 개수: 5.3% ○ TRQ증량: 소비량의 2.7%
특별품목	○ 적용 안됨	○ 개수: 전체 세번의 12% ○ 감축면제범위: 전체 세번의 5% ○ 평균감축률: 11%
SSG	○ SSG: 이행초 1%로 감축, 7년간 철폐	○ SSG: 12년간 2.5%로 감축(예상)
SSM	○ SSM: 적용 안됨.	○ SSM: UR양허관세 초과 제한적 인정 *2.5% 한정, 수입량이 140%증가시 발동, 초과 한도는 당해연도 양허관세의 15% or 15%p 중 높은 것으로 설정
OTDS, AMS, De minimis, 블루박스(BB)	○ 보조금 감축률(%) (예상) (잠정타협안은 미국EU의 OTDS 감축률만 제시)	○ 보조금 감축률(%)
	국가	국가
	OTDS	OTDS
	AMS	AMS
	De minimis	De minimis
EU	80	70
미국·일본	70	60
기타국가	50-60	45
50		
○ BB한도: '95-'00년 평균 농업총 생산액의 2.5%		○ BB한도: '95-'00년 or '95-'04년 평균 농업총 생산액의 5%